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공지사항	3
2018년 긴급지원사업안내	3

업무소개

공지사항

자료실

2018년 긴급지원사업안내

작성일 2018.03.15 14:42 등록자 주민복지실 조회수 159

긴급지원제도란?

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

긴급지원 대상자

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

-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 -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 -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 -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
 -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
 -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
 - 주소득자의 휴·폐업,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
 -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
 - 가족으로부터 방임·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
- *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(타법우선의 원칙)에 의거,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되지 않음

소득·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
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75%(1인기준 1,239천원, 4인기준 3,350천원) 이하
 - 재산: 대도시 13,500만원 이하, 중소도시 8,500만원 이하, 농어촌 7,250만원 이하
- * (재산의 의미) 일반재산+금융재산+보험, 청약저축, 주택청약 종합저축 - 부채
- 금융재산: 500만원 이하(단,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)

긴급지원내용 및 기간

* 생계비 지원

- 식료품비, 의복비 등 / 1개월 생계유지비 115.7만원(4인기준) / 최대6회

* 의료비지원

- 각종 검사,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/ 300만원 이내(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) / 300만원 이내 최대 2회

* 주거비지원

- 국가·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/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) 63.6만원 이내 / (대도시,4인기준) 최대12회

* 복지시설이용

-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/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
143.4만원 / (4인기준) 최대6회

* 부가급여

- 교육 • 초·중·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
- 초 21.9만원 / 중 34.8만원 / 고 42.7만원 및 수업료·입학금 2회 /최대 4회

* 그밖의 지원

-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
- 동절기(10월~3월) 연료비 : 9.5만원/월
- 해산비(60만원)
- 장제비(75만원)
- 전기요금(50만원) : 1회
- 연료비 6회

• 사회복지공동모금회,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
• 상담 등 기타 지원, 횟수제한없음

• ※ 부정수급...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.

•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,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※ 지원요청 및 신고

• 요청 및 신고자: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, 친척, 기타 관계인은 물론 발견자 누구나 연중 신청 가능

• 신고처 : “희망의 전화 129” 또는 강진군청 주민복지실 긴급지원담당자(061-430-3164)

목록

COPYRIGHT © GANGJIN-GUN. ALL RIGHT
RESERVED.

GANGJIN

Web Contents

